

충청북도 도·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992. 10. 28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10. 21

· 회부일자 : 1992. 10. 23

다. 상정일자 : 제83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위원회 (1992. 10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석상태)

가. 제안이유

- 도·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(대통령령 제 13411호 '91. 6. 29) 및 충청북도 직제 규칙 개정 (충청북도 규칙 제1779호 '91. 7. 19)에 따라
- 충청북도 도·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개설 허가 면적의 변경과 동 심의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의 직제가 개정되었기 변경 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도·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제2조 제2호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"매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"을 "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"으로 하고
-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"식산국장"을 "농어촌 개발국장"으로 "건설국장"을 "건설도시국장"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겸도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허 회)

-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개설허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현실에 비추어 불때 적정한 면적인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·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(91. 6. 29) 됨에 따른 후속적인 조례정비인 것이며
- 도·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(공무원) 위원중 직제가 개정됨에 따른 변경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없음"

5. 토론요지 : "없음"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도·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